

1999. 11. 2.

‘99공(시)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총무위원회

'99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'99년 10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'99년 10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'99년 11월 2일

○ 제안설명 : 회계과 재산관리담당

라. 의결일자 : '99년 11월 2일

2. 제안설명 요지

1) 제안이유

○ 수안보 물탕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 및 시군 통합 상징물 설치 부지 매입등 '99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상정함.

2) 주요 골자

〈물탕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로 부지 매입〉

- 상모면 온천리 290-1(토지 124m², 건물 545.57m²)

- 매입사유

- 수안보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물탕공원이 연계된 도로가 막혀 이용객들이 불편하므로 인접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함.

- 실소요 예상액 : 369,00천 원

- 물탕공원 사업비 잔액 : 252,000천 원, 시비 117,000천 원

〈시·군 통합 상징물 설치부지 매입〉

- 대상 재산의 표시 : 가금 루암 88-1의 7필지

- 수 량 : 8필지 /13,699m²

- 재산가액 : 176,942천 원

- 매입사유

- 중앙탑 사적 공원과 연계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·군 통합에 따른 상징물을 설치하고 향후 이용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설치 부지 및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비코자 함.

- 실소요 예상액 : 380,000천 원

- 특별 교부세 : 300,000천 원, 시비 80,000천 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수안보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물탕공원과 연계를 위한 개설코자하는 도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가 아니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행정재산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임.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취득·처분하는 대상재산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등 취득·처분하는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.
- 그러므로 그 사유재산을 매입 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시·군통합상징물 설치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지난 10. 22일 의원간담회의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충주시 상징물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금년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중앙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린바 있음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▶질의 : 금년도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예산은?

<답변> 2건 모두 금년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반납되어야 함.

▶ 질의 :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사유는?

〈답변〉 물탕공원 사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음이 원칙이나 사업결정이 최근들어 결정되었으며 집행잔액 또한 최근에 발생 되었음. 시·군 통합 상정률 또한 최근들어 사업결정이 된 것으로 됨.

▶ 질의 : 상징탑설치 부지 매입비 실소요예상액 380,000천원이란?

〈답변〉 보상 가격임.

▶ 질의 : 물탕공원 부지매입건은 사업성격상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데?

〈답변〉 이해는 가나 물탕공원사업 잔액으로 인한 사업이므로 제2회 추경에 도로 개설비는 포함하지 않았음.

▶ 질의 : 중앙탑 주변 이설도로 개설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지?

〈답변〉 도로개설시 판단하여야 함.

5. 심사결과

○ '99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: 원안가결

6. 별 입

○ '99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부 끝.